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2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리A	조리서기	1명	정년 적용	동해해양경찰서(동해)
조리B	조리서기보	1명		

※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경과 후 인력수급 및 조직변동 등의 사유로 근무관서 및 부서가 변경될 수 있음.

###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조리A	함정조리사 (조리서기)	조리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함정 식품 위생 및 승조원 영양관리</li><li>주부식 구매 검수 및 보건 안전 등 행정 관리</li><li>함정 승조원 대상 식사업무 제공 등</li></ul>
조리B	함정조리사 (조리서기보)	조리서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함정 승조원 대상 식사업무 제공</li><li>주부식 수급 및 관련 기타 행정업무 등</li></ul>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 4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조리A:24.11.25./조리B:24.11.27.)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합정 조리사 (조리 서기)	<p>○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li> <li>○ 조리 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중 1)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조리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중 1)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 관련분야 : 선박조리, 집단급식소 조리, 국내 호텔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조리 : 합정, 관공선, 상선 등 선박에서의 조리업무 담당 경력</li> <li>- 집단급식소 조리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은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마목의 위탁급식영업 포함)에서의 조리업무 경력</li> <li>- 국내 호텔 조리 :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라 3성급 이상으로 등급 결정된 호텔에서의 조리업무 담당 경력</li> </ul>

채용분야	직 위 별 요 건					
합정 조리사 (조리 서기보)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li> <li>○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ext-align: center;">기능장</td> <td>조리</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ext-align: center;">산업기사</td> <td>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중 1)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p>* 관련분야 : 선박조리, 집단급식소 조리, 국내 호텔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조리 : 합정, 관공선, 상선 등 선박에서의 조리업무 담당 경력</li> <li>- 집단급식소 조리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은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마목의 위탁급식영업 포함)에서의 조리업무 경력</li> <li>- 국내 호텔 조리 :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라 3성급 이상으로 등급 결정된 호텔에서의 조리업무 담당 경력</li> </ul>						

### 나-1. 경력증명 서류 제출사항

구 분	경력증명 제출 서류
선박 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경력)증명서</li> <li>- 승무경력증명서 또는 승무경력증명서</li> </ul>
집단급식소 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재직(경력)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급식업체' 근무경력 등으로 재직(경력)증명서 상의 소속 회사 명목과 근무지가 다를 경우, <b>반드시 파견 회사(근무지)의 주소와 연락처가 포함된 재직(경력)증명서 제출</b></li> </ul> </li> <li>- 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b>해당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사본</b> 이거나, <b>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a href="https://www.foodsafetykorea.go.kr">https://www.foodsafetykorea.go.kr</a>)의 해당 집단급식소 조회 출력물을 함께 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경력) 증명서 상의 소속 회사 외 <b>실제 근무한 집단급식소의 조회 출력물을 제출</b></li> </ul> </li> <li>- 2-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은 집단급식소 외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b>해당사항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집단급식소 관리 담당자의 확인서(대표자 직인과 발급자 연락처 포함) 등</li> </ul> </li> </ul>
국내 호텔 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경력) 증명서</li> <li>- 네이버에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검색, <b>붙임 엑셀파일 출력하여 해당부분 표시 후 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급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결정</li> </ul> </li> </ul>

※ 필수 서류(경력증명 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조리A : 24.11.25. / 조리B : 24.11.27.) 기준**으로 판단함

###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 여부)를 명시하고,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제출**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ex)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 ×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5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전문지식 :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6 시험 일정

구 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정	'24.10.14.(월) ~ 10.24.(목)	'24.10.14.(월) ~ 10.24.(목)	'24.11.8.(금)	'24.11.22.(금) ~ 11.27.(수)	'24.12.9.(금)

※ 면접일정 : (조리A) 11.22.(금)~11.25.(월) (조리B) 11.26.(화)~11.27.(수)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10.14.(월) ~ 10.24.(목)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원길 156,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우25820) / 문의전화 : 033-680-2416, 2716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으로 발송 예정이며, 응시표는 면접시험장 배포

### 나. 제출서류

구 분	비 고
1.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	<b>[별지서식 제1호]</b>
2. 응시원서 1부	<b>[별지서식 제2호]</b> ○ 응시수수료 : 8-9급, 5,000원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b>[별지서식 제3호]</b>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중 해당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b>[별지서식 제4호]</b>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b>[별지서식 제5호]</b> ○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기재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동의서	<b>[별지서식 제6호]</b> ○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비 고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b>[별지서식 제7호]</b> ○ 자필 서명 필수
8. 관련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b>[별지서식 제8호]</b> ○ 관련 경력 모두 작성
9.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0. 경력증명 제출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선 박 조 리
	집 단 급 식 소 조 리
	국 내 호 텔 조 리
<p style="text-align: center;">경력증명 제출 서류</p> <p>- 재직(경력)증명서 - 승무경력증명서 또는 승함경력증명서</p> <p>1) 재직(경력) 증명서 ※ '위탁급식업체' 근무경력 등으로 재직(경력)증명서 상의 소속 회사 명외의 근무지가 다를 경우, <b>반드시 파견 회사(근무지)의 주소와 연락처가 포함된 재직(경력)증명서 제출</b></p> <p>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b>해당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사본</b> 이거나 <b>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a href="https://www.foodsafetykorea.go.kr">https://www.foodsafetykorea.go.kr</a>)의 해당 집단급식소 조회 출력물을 함께 제출</b> ※ 재직(경력) 증명서 상의 소속 회사 외 <b>실제 근무한 집단급식소의 조회 출력물을 제출</b></p> <p>2-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은 집단급식소 외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b>해당사항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b> ※ 예) 집단급식소 관리 담당자의 확인서(대표자 직인과 발급자 연락처 포함) 등</p> <p>- 재직(경력) 증명서 - 네이버에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검색, <b>붙임 엑셀파일 출력하여 해당부분 표시 후 제출</b> ※ 등급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결정</p> <p>※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 여부)명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회사와 근무지가 다를 경우 반드시 실제 근무지의 주소와 연락처를 포함한 서류로 제출</p>	
11.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경력증명 제출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25.1.8.)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 소득금액증명서의 경우, 소득발생처가 확인될수 있도록 소득발생여부 공개 후 발급·제출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033-680-2416,2716)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붙임 2

##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리A	함정조리사	일반직8급 (조리서기)	1명	동해해양경찰서(동해)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정 승조원들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 업무</li> <li>○ 주·부식 검수 등 식품 구매 관리 업무 전반</li> <li>○ 함정 식품 위생 및 보건 안전관리 업무</li> <li>○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및 무허가 제품 점검 업무</li> </ul>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li> <li>○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li> <li>○ (직렬별 역량)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등</li> </ul>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부식 조리 관련 전문지식</li> <li>○ 식품 위생 관련 교육·경력 및 전문지식</li> <li>○ 식단 구성 및 원가계산 등에 관한 지식</li> <li>○ 함정 근무에 대한 이해 및 기본 운영 관련 지식</li> </ul>
-------	---

응시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li> <li>○ 조리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li> <li>○ 조리 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중 1)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조리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중 1)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b>【관련분야】</b> 선박 조리, 집단급식소 조리, 국내 호텔 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조리: 함정, 관공선, 상선 등 선박에서의 조리업무 담당 경력</li> <li>- 집단급식소 조리: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은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제마목의 위탁급식영업 포함)에서의 조리업무 경력</li> <li>- 국내 호텔 조리: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라 3성급 이상으로 등급 결정된 호텔에서에서의 조리업무 담당 경력</li> </ul>
--------	--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b>조리B</b>	함정조리사	일반직9급 (조리서기보)	1명	동해해양경찰서(동해)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정 승조원들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 업무</li> <li>○ 정박 시 주·부식 수급 및 관련 기타 행정업무</li> <li>○ 취사 시 식중독 등 예방 업무</li> <li>○ 조리도구에 대한 위생상태 모니터링 업무</li> </ul>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li> <li>○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li> <li>○ (직렬별 역량)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등</li> </ul>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부식 조리 관련 전문지식</li> <li>○ 식품 위생 관련 교육·경력 및 전문지식</li> <li>○ 식단 구성 및 원가계산 등에 관한 지식</li> <li>○ 함정 근무에 대한 이해 및 기본 운영 관련 지식</li> </ul>
-------	---

응시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0;">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능장</td> <td>조리</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산업기사</td> <td>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td> </tr> </table> </li> <li>○ 조리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중 1)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b>【관련분야】</b> 선박 조리, 집단급식소 조리, 국내 호텔 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조리: 함정, 관공선, 상선 등 선박에서의 조리업무 담당 경력</li> <li>- 집단급식소 조리: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은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제마목의 위탁급식영업 포함)에서의 조리업무 경력</li> <li>- 국내 호텔 조리: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라 3성급 이상으로 등급 결정된 호텔에서 조리업무 담당 경력</li> </ul>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별지서식 2>

(앞 면)

## 응시원서 (원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본인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응시번호	※ 추후 문자로 개별 발송 예정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종이문서형 수입인지는 응시원서 다음으로 첨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등 채용 관련 문자가 발송되오니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응시표 (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응시번호	※ 추후 문자로 개별 발송 예정	성명	(한글) (한자)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공지된 시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 작성요령

- ① 「※」 표시란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직급 및 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예) 조리서기(함정조리사\_조리A)
- ③ 응시자격 : 공고문 상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반드시 택 1**  
※ 응시자격요건 문구 수정 금지  
(예1) 조리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예2) 조리 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중 1)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예3) 조리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중 1)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복수국적 자가 아닐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⑦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 력 서

##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응시 자격 요건	성명
----------	----------	----------	----------------	----

## 2. 응시자격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 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유효기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 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추후 문자발송 예정)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반드시 택 1  
예) 000자격증 / 조리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응시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해당 자격증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경력 요건 중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 분야에서의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발급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전형 등 경력 산출 시 해당자의 최종시험(면접)예정일로 경력 산출 예정이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총 4종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예-주 00시간) /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별지서식 4>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4. 00. 00.

성명 :

(서명)

<별지서식 5>

##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4. 00. 00.

성명 :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 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 관련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근무기관 (부서명/연락처)	근무기간	근무 월일수	직위 (급)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근무형태	증빙자료
OO주식회사 (부) (033-680-0000)	2011.1. 1 ~ 2012.3.10	00년00개월 00일	과장 (4급)	o 상세하게 o o	주40시간	경력증명서
	2012.3.11 ~ 2014.3.11	00개월00일	과장 (4급)	o o o	주40시간	경력증명서
OO주식회사 (부) (033-680-0000)			대리		주00시간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서
OO주식회사 (부) (033-680-0000)						4대보험 자격 득실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b>총 경력</b>		00개월00일				

**【작성요령】**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14개월 10일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⑤ 주요수행업무 및 업무실적은 요약하여 8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⑥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예-주 00시간)

(경력증명서 예시)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증명 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근무형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주40시간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자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인
대표자:			인		
<p>* 위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시 발급기관 서식으로 제출 가능</p> <p>* 근무경력 중 휴직기간(병가 등) 있는 경우 작성</p> <p>*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기재하지 않고 발급기관 담당자가 작성</p> <p>*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p> <p>* <b>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b></p>					

## <별지서식 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서류가 원본일 경우 신청가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발송 시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

[보내는 사람]

□□□□□

응시구분	ex) 조리서기보(조리B)
성 명	
휴 대 폰	

**동해해지방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조리)  
채용 제출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금지]**

※ 제출서류는 '24. 7. 26. ~ 8. 5.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소인분에 한함)

[받는 사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원길 156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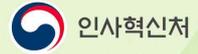
☎ 033-680-2416

2 5 8 2 0

등기 발송증 부착

# 참고 1

#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



대한민국 공직, 공무원, 공직문화, 채용시험 정보까지 한번에, 제대로,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곳은?

## 공무원 채용시험 봄

합격 아재짱~  
 힘내라 후준생 ☆ ☆  
 I am 공무원 okay요~  
 공무원이 되기까지 원년까지 꾸준생  
 응하는 취업 성공! 공직으로의 이지도 소자  
 널 응원해 굿 초이스!

직업으로서 공무원 어때요?

△△부처는 일하기 좋은 분위기인가요?

요즘 공직문화 얼마나 달라졌어요?

자유로운 스토리 가능한가요?

공직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공직생활의 장점과 매력은?

개인의 성장도 증시하나요?

위라벨 진짜 좋은가요?

시험일정은? 선발인원은? 갖추어야 할 응시요건은?

고리에 고리를 무는 공직문화와 공무원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바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구분	원서제출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개경쟁 채용시험	5급공채(행정)	1. 25. ~ 29.	3. 2.	6. 28. ~ 7. 3.	10. 29. ~ 31.	11. 15.	
	5급공채(기술)			7. 4. ~ 9.			
	외교관후보자 선발			-	11. 1.		
	7급공채	5. 16. ~ 20.	7. 27.	10. 12.		12. 4. ~ 7.	12. 20.
	9급공채	1. 18. ~ 22.	3. 23.		5. 28. ~ 6. 2.	6. 21.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1. 30. ~ 2. 2.		3. 2.	4월 중	5. 9. ~ 10.	5. 24.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7. 22. ~ 26.		8. 31.	10월 말	11. 26. ~ 28.	12. 20.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6. 3. ~ 11.		7. 27.	9월 중	11. 6. ~ 13.	12. 30.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3. 26. ~ 4. 1.		-	4월 말	6. 20. ~ 21.	8. 14.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들어오셔서  
 2024년도 시험일정 사전 알림 신청 을 선택하시면  
 원서제출기간 및 시험기일 1주일 전에 SMS 문자로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에정적렬 및 선발인원, 응시자격요건, 시험과목, 시험방식 등의 자세한 시험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2040 청춘(청춘) 세대가 대한민국 정부, 공직문화,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창구이자 동기부여가 되는 희망찬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한 공직소통 채널입니다.



# 참고 2

#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소개

##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인사혁신처**

###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1

**[휴직]**

**질병휴직**

-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 및 불안·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 지원을 위한 질병휴직 중 임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복직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여성공무원이 임신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출근 의무가 없는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임신 시, 인센티브에 복직휴가를 하여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임신 전) 난임치료시술휴가**

- 여성공무원은 인공수정 시술 시 총 2일, 체외수정 시술 시 총 3~4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성공무원의 정자 채취일 당일 하루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용 특별휴가 일수>**

대상	시술 종류	휴가일수
여성	인공수정 시술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3일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	4일
남성	정자 채취	1일

**(임신 후) 임신감진휴가**

-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감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감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감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2

**[휴가]**

**(임신 후) 모성보조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조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조시간 사용에 특별한 제한요건이 있나요?**

A. 모성보조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신청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출근을 전제로 하는 등 다른 특별휴가와의 중복여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 출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태아의 경우 120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태아 임신 시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기간 배치는 의료기관 진단서상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18일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다녀오시던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하고, 12일 이내 범위에서 2일(남녀 이혼 시 7일)까지 추가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지급합니다. (23년 하반기 기준 예정)**

**[인사관리]**

**임신 공무원 필수보조기간 내 정보 허용**

-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조기간 내 정보가 허용됩니다.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기간 출장 제한**

- 기간정상은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산 공무원의 신청 시, 장거리-장기간 출장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공무원 아간 및 휴일 근무명령 금지**

- 기간정상은 임신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났지 않은 공무원에게 야간(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 공무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간 및 휴일 근무명령이 가능합니다.

### 2. 임신·출산 물적 지원

**[맞춤형 복지]**

**난임 시술비 지원**

- 난임 시술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점수 500점(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1회 지원됩니다.

**태아·산모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 시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총 200점(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0점(2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000점(30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합니다.
-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공무원 연금대출**

-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이거나, 신혼부부 공무원 등은 사회 정책적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대출에는 일반대출, 주택차용대출, 사회적취약계층 3종이 있으며, 사회적취약계층은 다른 대출 대비 1%p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사회정책대우를 받기 위한 신청부담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A. 대출 신청 시, 결혼 전 6개월 이내 또는 결혼 후 전 12개월 이내, 결혼 전 신청 시에는(예외성 제외)혼, 결혼 후 신청 시에는 혼전공동재산으로 증명해야 하며,...

**공무원 임대주택**

-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입주 후에 임신·출산·출장할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차주택**

- 임차주택 신청 시, 임차료 6개월 이내 또는 월세 7천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차료 중 일부는 임차보증금으로 충당되며, 임차보증금 10%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준비비용 지원사업**

- 임신·출산 공무원에게 1차·2차 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지원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전용 온라인몰에서 신청하는 품목을 선택·구매 가능합니다.

### 3. 육아 환경 지원

**[휴직]**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요?**

A.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에는 육아휴직 신청으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가]**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24개월 신청방식은?**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월당 8회(최고 3회) 신청 가능하며, 다음 기간의 신청일(1개월)은 1개월로 불리고,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을 참하여 1개월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 어린아동 유입,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육아 공무원 필수보조기간 내 정보 허용**

-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조기간 내 정보가 허용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 정규직 공무원의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전향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근무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전일제 공무원으로 회복됩니다.

### 4. 육아 물적 지원

**[각종 수당]**

**가족수당**

- 자녀 양육 시, 첫째는 3만원, 둘째는 2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만원의 가족수당이 매달 지급됩니다.
- 일회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평균급의 80%(상향액) 150만원, 하반기 7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1명당입니다.

**부양가족이 돌봄 직업을 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수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A. 부양가족이 돌봄 직업을 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5개월에는 월평균급 100%에 상향된 산입으로 지급됩니다.

**재직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직공무원이 재직 중인 해는 재직공무원에게는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맞춤형 복지]**

**가족접수 부여**

- 자녀 양육 시, 첫째 50점(5만원), 둘째 100점(10만원), 셋째 이후 자녀 200점(2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가 매년 부여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공무원 연금대출**

- 미취학자녀 육아, 3자녀 이상 양육,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등은 사회적취약계층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자녀 3자녀 이상 양육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A. 2023년 기준으로 미취학자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의미하고, 3자녀 이상 양육 기준은 미취학 3자녀 이상이고, 그 중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점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 5.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이용대상: 만 0세에서 만 5세 취학 전의 각 장부장사 입주부서에 근무 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 근로자

·이용시간: 월요일 07:30 ~ 13:30, 화요일 07:30 ~ 13:30

청사	아이비집	연락처
관동	관동1	044-262-1676
	관동2	044-866-2017
	관동3	044-866-1542
서울	서울1	044-854-8123
	서울2	044-427-5501
대전	대전1	042-175-7007
	대전2	042-175-7007
부산	부산1	051-729-7327
	부산2	051-729-7327
대구	대구1	053-632-7912
	대구2	053-632-7912
인천	인천1	032-588-4536
	인천2	032-588-4536
광주	광주1	032-588-4536
	광주2	032-588-4536
경남	경남1	055-981-6321
	경남2	055-981-6321
충청	충청1	042-481-6422
	충청2	042-481-6422
전남	전남1	062-739-3700
	전남2	062-739-3700
제주	제주1	064-727-9504
	제주2	064-727-9504
충북	충북1	043-823-1934
	충북2	043-823-1934
충남	충남1	042-626-1934
	충남2	042-626-1934
대전	대전1	042-481-6422
	대전2	042-481-6422
대구	대구1	053-632-7912
	대구2	053-632-7912
인천	인천1	032-588-4536
	인천2	032-588-4536
광주	광주1	032-588-4536
	광주2	032-588-4536
경남	경남1	055-981-6321
	경남2	055-981-6321
충청	충청1	042-481-6422
	충청2	042-481-6422
전남	전남1	062-739-3700
	전남2	062-739-3700
제주	제주1	064-727-9504
	제주2	064-727-9504
충북	충북1	043-823-1934
	충북2	043-823-1934
충남	충남1	042-626-1934
	충남2	042-626-1934
대전	대전1	042-481-6422
	대전2	042-481-6422
대구	대구1	053-632-7912
	대구2	053-632-7912
인천	인천1	032-588-4536
	인천2	032-588-4536
광주	광주1	032-588-4536
	광주2	032-588-4536
경남	경남1	055-981-6321
	경남2	055-981-6321
충청	충청1	042-481-6422
	충청2	042-481-6422
전남	전남1	062-739-3700
	전남2	062-739-3700
제주	제주1	064-727-9504
	제주2	064-727-9504
충북	충북1	043-823-1934
	충북2	043-823-1934
충남	충남1	042-626-1934
	충남2	042-626-1934
대전	대전1	042-481-6422
	대전2	042-481-6422
대구	대구1	053-632-7912
	대구2	053-632-7912
인천	인천1	032-588-4536
	인천2	032-588-4536
광주	광주1	032-588-4536
	광주2	032-588-4536
경남	경남1	055-981-6321
	경남2	055-981-6321
충청	충청1	042-481-6422
	충청2	042-481-6422
전남	전남1	062-739-3700
	전남2	062-739-3700
제주	제주1	064-727-9504
	제주2	064-727-9504
충북	충북1	043-823-1934
	충북2	043-823-1934
충남	충남1	042-626-1934
	충남2	042-626-1934
대전	대전1	042-481-6422
	대전2	042-481-6422
대구	대구1	053-632-7912
	대구2	053-632-7912
인천	인천1	032-588-4536
	인천2	032-588-4536
광주	광주1	032-588-4536
	광주2	032-588-4536
경남	경남1	055-981-6321
	경남2	055-981-6321
충청	충청1	042-481-6422
	충청2	042-481-6422
전남	전남1	062-739-3700
	전남2	062-739-3700
제주	제주1	064-727-9504
	제주2	064-727-9504
충북	충북1	043-823-1934
	충북2	043-823-1934
충남	충남1	042-626-1934
	충남2	042-626-1934
대전	대전1	042-481-6422
	대전2	042-481-6422
대구	대구1	053-632-7912
	대구2	053-632-7912
인천	인천1	032-588-4536
	인천2	032-588-4536
광주	광주1	032-588-4536
	광주2	032-588-4536
경남	경남1	055-981-6321
	경남2	055-981-6321
충청	충청1	042-481-6422
	충청2	042-481-6422
전남	전남1	062-739-3700
	전남2	062-739-3700
제주	제주1	064-727-9504
	제주2	064-727-9504
충북	충북1	043-823-1934
	충북2	043-823-1934
충남	충남1	042-626-1934
	충남2	042-626-1934
대전	대전1	042-481-6422
	대전2	042-481-6422
대구	대구1	053-632-7912
	대구2	053-632-7912
인천	인천1	032-588-4536
	인천2	032-588-4536
광주	광주1	032-588-4536
	광주2	032-588-4536
경남	경남1	055-981-6321
	경남2	055-981-6321
충청	충청1	042-481-6422
	충청2	042-481-6422
전남	전남1	062-739-3700
	전남2	062-739-3700
제주	제주1	064-727-9504
	제주2	064-727-9504
충북	충북1	043-823-1934
	충북2	043-823-1934
충남	충남1	042-626-1934
	충남2	042-626-1934
대전	대전1	042-481-6422
	대전2	042-481-6422
대구	대구1	053-632-7912
	대구2	053-632-7912
인천	인천1	032-588-4536
	인천2	032-588-4536
광주	광주1	032-588-4536
	광주2	032-588-4536
경남	경남1	055-981-6321
	경남2	055-981-6321
충청	충청1	042-481-6422
	충청2	042-481-6422
전남	전남1	062-739-3700
	전남2	062-739-3700
제주	제주1	064-727-9504
	제주2	064-727-9504
충북	충북1	043-823-1934
	충북2	043-823-1934
충남	충남1	042-626-1934
	충남2	042-626-1934
대전	대전1	042-481-6422
	대전2	042-481-6422
대구	대구1	053-632-7912
	대구2	053-632-7912
인천	인천1	032-588-4536
	인천2	032-588-4536
광주	광주1	032-588-4536
	광주2	032-588-4536
경남	경남1	055-981-6321
	경남2	055-981-6321
충청	충청1	042-481-6422
	충청2	042-481-6422
전남	전남1	062-739-3700
	전남2	062-739-3700
제주	제주1	064-727-9504
	제주	